
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(김예지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7024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2. 25.

발 의 자 : 김예지 · 유용원 · 송석준
김선민 · 서미화 · 김선교
김대식 · 서영석 · 임종득
박덕흠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저소득층,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·노인·장애인 및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감염취약계층으로 규정하고,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들에게 의료·방역물품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장애인은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장애로 인하여 비장애인보다 감염병 위기에 더욱 취약함. 일례로,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장애인 사망률은 2.61%로 비장애인 사망률(0.44%)보다 6배가량 높았음.

이에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인 전체를 감염취약계층으로 하고, 질병관리청장 또한 감염취약계층에 대하여 의료·방역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을 감염병 위기로

부터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(안 제34조제2항제5호의2 및 제49조의2제1항).
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4조제2항제5호의2 중 “감염취약계층”을 “제49조의2에 따른 감염취약계층”으로 한다.

제49조의2제1항 중 “보건복지부장관”을 “보건복지부장관, 질병관리청장”으로, “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, 노인, 장애인”을 “저소득층, 장애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, 노인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34조(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의 수립·시행) ① (생략) ②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1. ~ 5. (생략) 5의2. <u>감염취약계층</u> 에 대한 유형별 보호조치 방안 및 사회복지시설의 유형별·전과상황별 대응방안 6. (생략) ③·④ (생략)	제34조(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의 수립·시행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. 1. ~ 5. (현행과 같음) 5의2. <u>제49조의2에 따른 감염취약계층</u> ----- ----- -----
제49조의2(감염취약계층의 보호 조치) ① <u>보건복지부장관</u> 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호흡기와 관련된 감염병으로부터 <u>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, 노인, 장애인</u> 및 기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대상(이하 “감염취약계층”이라 한다)을 보호하기 위하여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8조제2항에 따른	제49조의2(감염취약계층의 보호 조치) ① <u>보건복지부장관, 질병관리청장</u> ----- ----- ----- <u>저소득층, 장애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, 노인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
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 된 경우 감염취약계층에게 의 료·방역 물품(「약사법」에 따른 의약외품으로 한정한다)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 ②·③ (생략)	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②·③ (현행과 같음)
---	---